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3.15.)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 목 차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7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27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3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별표 4)
  -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월 500,000원 지급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 별표 9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4,500천원 확보(1명\*500천원\*9월=4,500천원)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개혁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2. 27.~'18. 1.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의령군

## 5. 검토의견

- 가. 최근 들어 가축법정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제2종과 제3종인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AI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이러한 전염병이 단순히 농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전국의 각종 행사, 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과로사로 순직하는 가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현장근무를 회피하여 직원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라.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마.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8호, 2017.9.5.,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 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8호, 2017.9.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략~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다. (생략)

라.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상향 조정(별표 9)

수의직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출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위임조례 정비과제(임의조례)

법령명	시행일	법령위임 조례내용	필수조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17.9.5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다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출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25만원초과 월5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수 있도록함. (월 250,000원(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조례

[별표 4] <신 설>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5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월 250,000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위임조례 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를 정함(안 제6조)
  -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충사항이 대상
- 라.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마.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의 기본원칙, 고충민원과의 구분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를 정함(안 제12조)

사.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제·개정현황: 제정 5개시·군, 전부개정 9개시·군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 5. 검토의견

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권리보호 요청, 세무담당부서와 독립 등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정(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4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분(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분은 처분청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군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현행)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18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 나. 위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조정함(안 제5조·제7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 ⇒ 3년으로 변경함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안 제10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11조~14조, 제16조~제18조)

-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기한의 특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75조의2·제92조의2,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2. 14.~3. 0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9): 김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통영, 함안,  
고성, 창원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 5. 검토의견

- 가.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조례 개정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었거나 재기재한 사항과 개정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 개정과, 전자송달 방식 납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추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5.3.27., 2015.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

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제4장 보칙 <신설 2014.1.1.>**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

액이 추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 □ 「경상남도 도세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4장 보칙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시행 '18.1.1.)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함(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2. 12.~3.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개정현황(입법예고 9)
  -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산청, 함안, 함양
-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건설팅사례 반영

## 5. 검토의견

- 가. 상위 법령에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2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됨
- 나. 우리군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조례 제명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2017.2.8., 타법개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

### ①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활용방안 마련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22-16번지 일원
- 면 적: 92,909㎡(토지소유자: 강\*\* 외 1명)
- 사업기간: 2018. 1. ~ 2019. 12.
- 사 업 비: 600백만원(군비 600)
- 주요기능: 자연휴양림(308,056㎡)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6필지		92,909	20,525			
취득	토지	고제면 개명리 산22-16	임	1,061	268	2018	거함산 (거창) 항노화 휴양체험 지구조성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23	임	6,218	1,461			강**
		고제면 개명리 산22-35	임	38,609	9,228			강**
		고제면 개명리 산23-1	임	11,914	2,287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9	임	24,198	4,259			박**
		고제면 개명리 산23-11	임	10,909	3,022			박**

## 다. 추진경과

- 2012. 12.: 백두대간권 발전계획 사업 반영
- 2015. 12.: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6년 예산 반영
- 2016. 6.: 자연휴양림 지정고시(308,056m<sup>2</sup>)
- 2016. 12.: 거함산(거창)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에 따른 설계 용역 실시
- 2018.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

## 라.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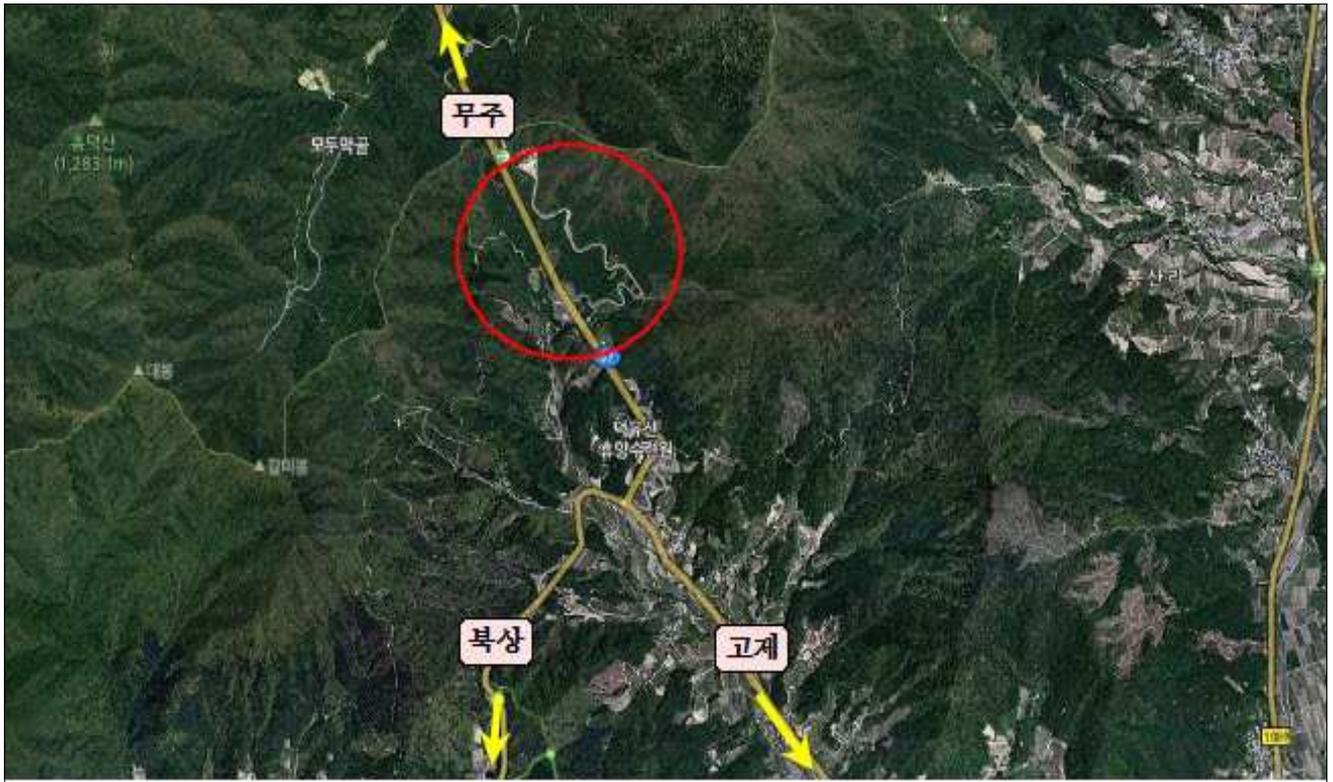
- 2018. 3.: 거함산(거창)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 2018. 4.: 용지보상실시
- 2018. 4.: 사업시행
- 2019. 12.: 사업완료

## 마. 기대효과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연계로 체험, 체류, 레저 및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명소 창출
- 산악레저와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외부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가. 위치도(고제면 개명리 산22-16외 5필지)



나. 현황사진



## 다. 조감도



### 4.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5. 검토의견

-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이 백두대간권 사업에 필요하다면 매입이 당연하다 여겨지나 혹 백두대간 사업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형성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②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 1. 제안이유

- 백두대간 폐도(국도 37호선) 주변 생태복원과 체험단지 내 시행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등과 연계 체험·체류·레저가 가능한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화를 위해 휴양관 및 화장실을 건립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4번지 일원
- 건축규모: 864.1m<sup>2</sup>
  - 산림휴양관 1동,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1동
  - 주차장 안내소 및 화장실 1동
- 사업기간: 2018. 3. ~ 2019. 12.
- 사 업 비: 9,900백만원(국비 4,950, 도비 1,485, 군비 3,465)
  - 세부사업비 내역

항 목	주요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조경포장 등	2,409	
토목공사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	3,330	
건축공사	산림휴양관, 화장실, 안내실 등	2,660	
전기,통신공사	보안 등, 경관조명, CCTV 등	701	
부대공사	설계 및 공사 감리비	800	

- 주요기능: 향노화휴양체험지구 내 산림휴양관 및 화장실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위치	취득내역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계				864.1	2,660,000			
취득	건물	고제면 2054번 지원	산림휴양관 지하 1층, 지상 3층	682	2,480,000	2019	항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관련시설 건립	
			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지상1층	114.5				
			주차장 안내소 및 화장실 지상 1층	67.6	180,000			

※ 토지소유자: 거창군

## 다. 추진경과

- 2014. 3.: 내륙권발전(백두대간권) 선도사업 선정
- 2014.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2.: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 2016. 1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토지 취득)
- 2017. 12.: 설계용역 완료
- 2017. 12.: 체험길 조성 공사 착공

## 라. 향후계획

- 체험길 조성 공사 준공: 2018. 4.
- 휴양관 등 건립 공사 인허가 및 계약심사: 2018. 3. ~ 4.
- 휴양관 등 건립 공사 착공: 2018. 4.
- 휴양관 등 건립 공사 준공: 2019. 12.

## 마. 기대효과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빼재 스피드익스트림사업 연계로 4계절 이용 가능한 백두대간권 핵심 산악레저 타운 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가. 위치도



#### 나. 조감도



#### 4.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5. 검토의견

-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백두대간권 사업과 연계로 부대시설인 휴양관과 화장실 건립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사업 성격에 조화가 되도록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 1. 제안이유

-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48번지 외 1필지
- 면 적: 1,428m<sup>2</sup>
- 사 업 비: 200백만원(군비 200)
- 소 유 자: 강\*\*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1,428	17,669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8	전	1,052	14,202	2018	위천천 주변자연학습장 외길 조성사업	강**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8-1	전	376	3,467				

##### 다. 추진경과

- 거열산성 군립공원 지정(1983. 11월)
- 거열산성 군립공원계획 결정 고시(거창군 고시 제2012-121호)
- 거열산성 군립공원계획 지형도면 고시(2013. 1월)
-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2014년 ~ 2016년)
  -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거창읍 상림리 670 외 2필지
  - 거열산성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거창읍 송정리 1051 외 2필지

## 라.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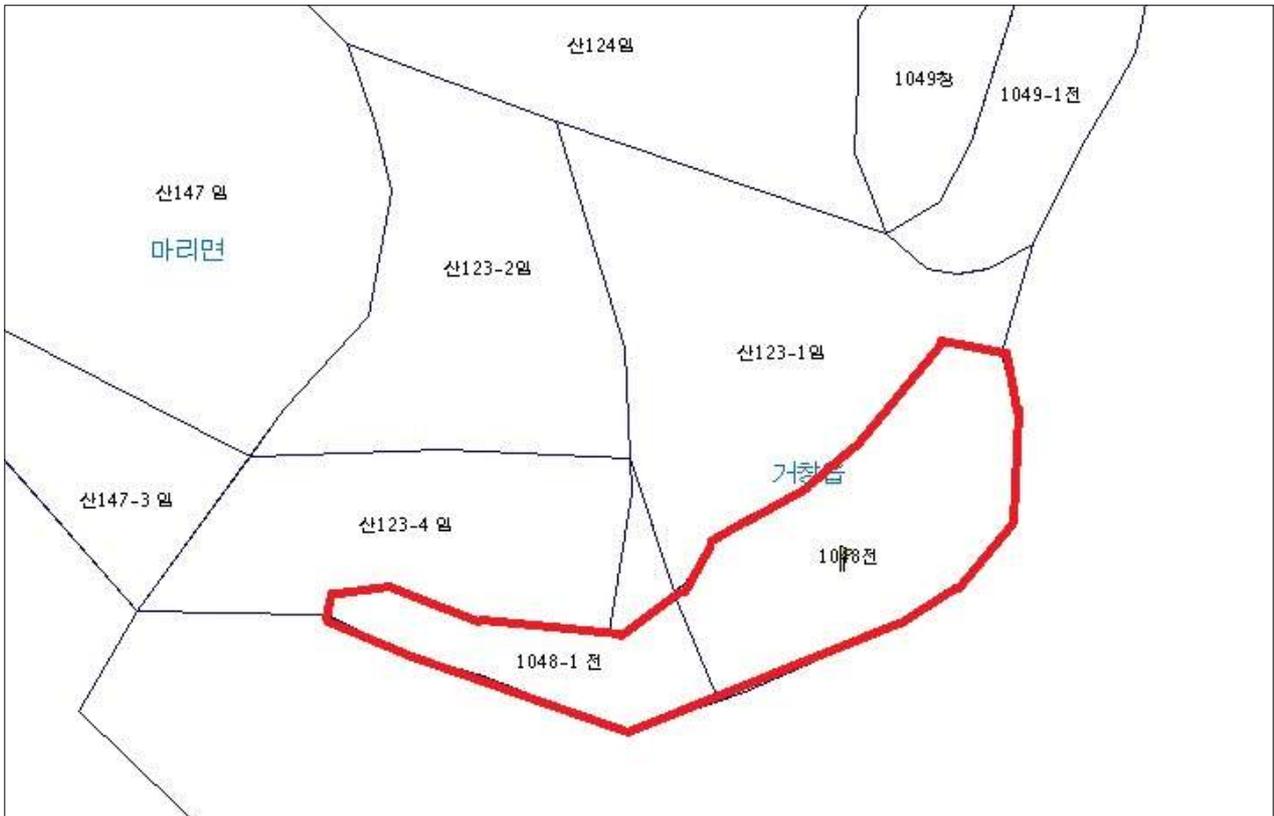
- 2018. 3.: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18. 4.: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

## 마. 기대효과

-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관리계획 수립 가능
- 군립공원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공원 이용의 다변화 및 다양화 도모

## 3. 지적도 및 위치, 현황사진

### 가. 지적도(거창읍 송정리 1048 외 1필지)



나. 위치도



다. 현황사진



#### 4. 관련법규 등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5. 검토의견

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원 내 사유지의 장기간 제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토지 취득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건립

##### 1.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농·특산물 판매와 친환경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8-1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17. 1. ~ 2019. 12.(3년)
- 사 업 비: 2,200백만원(기금 2,200)
- 건축규모: 500m<sup>2</sup>
- 사업내용: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신축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위 치	취득내역	연면적				
취득	건물	거창읍 가지리 188-1, 188-2, 187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지상 3층)	500	1,400,000	2019	거창 하천환경 교육센터 건립	

※ 2017.11.13. 제22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가지리 188-1 외 2필지(1,451m<sup>2</sup>) 취득(290,416천원)

###### 다. 추진경과

- 2016. 12.: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 2017. 11.: 제22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7. 11.: 토지보상완료
- 2017.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라.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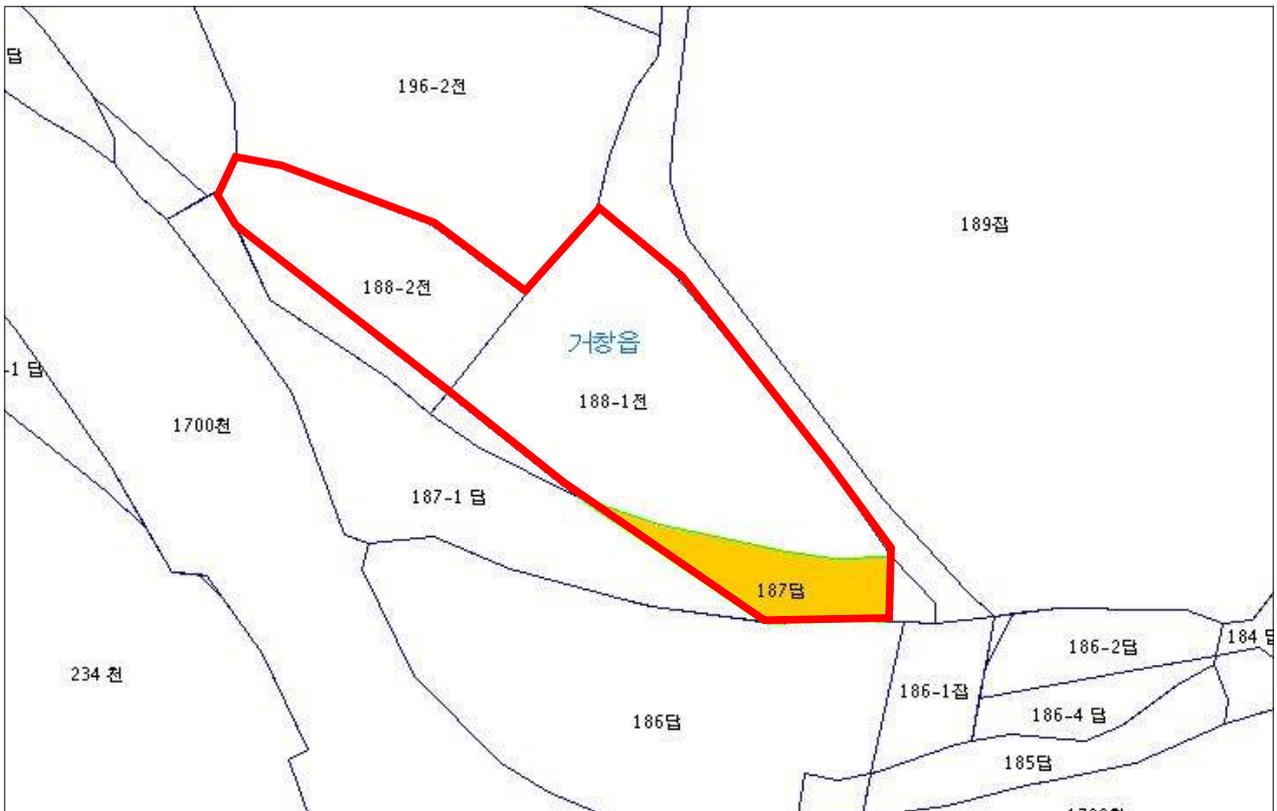
- 2018.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5.: 공사착공
- 2019. 12.: 공사준공

## 마. 기대효과

- 친환경 교육으로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과 실천적 참여 유도
- 주민 소득증대 및 친환경 인식확산에 기여

##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 지적도



## 나. 위치도



## 다. 현장사진



#### 4. 관련법규 등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5. 검토의견

- 가. 제22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때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안건은 환경교육센터를 건  
립하는 사업으로
- 나.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주변 환경이나  
교통소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된바 있음
- 다. 이번 환경교육센터 건립도 위치, 방향 그리고 면적 등 활용  
성이 있도록 건립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심도 있는 검  
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2조)

-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3조)

- 법령에 없는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

⇒ 위원이 대행

마.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0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정비현황(제3조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심으로)

○ 미정비(3):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 5. 검토의견

-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재기재하여 위배소지가 있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법제처 협업과제

조문 및 내용	문제점	개선안	유형
(제3조제3항)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u>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정할 경우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u> 특히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의 경우에 전문성과 관련 없이 추천한 의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도록 정할 경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지식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규정하여야 함.	제3조제3항 삭제검토.	상위 법령 위반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면적제한 규정 삭제함(안 제3조 단서)
  - 매점 면적제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 위배
-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 관리 규정 삭제

####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함(안 제8조)

-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완료(3): 사천, 진주, 의령

## 5. 검토의견

- 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조문 및 내용	문제점	개선
(제3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 정함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대상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두거나 조례로 대상시설의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조례에서는 매점의 규모를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여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24513호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함)제27조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은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3.4.22. 삭제되었음	면적 제한 문구 삭제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어긋남	상위법령에 맞게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정 또는 삭제
(제7조)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됨	제7조단서 삭제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 「노인복지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6호, 2017.3.14., 일부개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8호, 2017.10.31., 일부개정]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11.14., 일부개정]

**제88조의3(생업지원)**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삭제 <2013.10.30.>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본조신설 2008.9.26.]

[제목개정 2013.10.3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1.] [법률 제1503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10조의2(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전문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3.10.3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5에서 이동 <2014.2.1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

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6.]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거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계층 ⇒ 저소득주민

###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실효성 없어 삭제: 소년소녀가장세대

라.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25.~2.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14개 시·군

## 5. 검토의견

가. 용어의 순화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2017.2.8.>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권설텩 사례

<p><u>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u></p>	<p>삭제</p>	<p>○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 삭제함</p>
<p><u>제28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삭제</p>	<p>○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위한 직접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법제처 의견 15-0347 참조).</p>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

## 5. 검토의견

가. 용어에 대한 정확한 법령명칭을 명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19호, 2016.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임행정규칙

[시행 2017.1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2017.11.3,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11.(생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0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 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보험가입 규정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18년도 예산 600만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7.~2. 0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센터 등록 및 보험지원 정비관련)
  - 개정완료(2): 통영, 함안
  - 입법예고(1): 진주
-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 5. 검토의견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재개정하고 현시점에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법제처 발췌 과제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제9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조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	해당 규정 삭제
제18조 제2항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주체는 군수임. 군수가 보험가입하는 것이므로 군수가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실제 보험가입업무는 센터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처리절차에 불과함.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는 규정 삭제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

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7.]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7.]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실적 정보를 수집(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장·보유·가공·제공(자원봉사활동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3. 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3. 6.

## 2.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조례 전반, 안 제29조)
  - 성평등 ⇒ 양성평등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 나. 법령위배 및 개별조례 제정·시행 중인 사항 등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13조, 제25조, 제31조, 제37조~제39조)
  - 정의규정 삭제: 성평등, 성차별

- 군수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의무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
- 성평등정책위원회 규정 삭제: 구성·운영 실적 전무, 실효성 없음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규정 삭제: 「거창군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5.3.25. 제정 시행 중) 규정사항
- 양성평등기금 삭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7.9.27. 제정 시행 중)
- 그 밖에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양성평등계정에서 지원
  - 사무의 위탁, 수당 규정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7.~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위배 및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 [전부개정]

##### ◇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으며,

이미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따라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이하 생략~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

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